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지원개요

1. 용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미 관세정책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업체(업종무관)

가. (직접) 24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나. (간접) 24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수출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3. 지원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업체

-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 라. 휴·폐업 중인 업체
-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바.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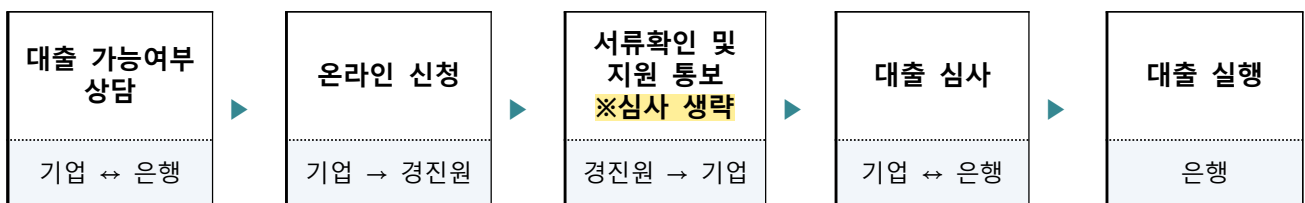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참고 1] 참조

4. 용자조건

-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
 - ※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결정
 - ※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 별도 지원
- 나. 용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 라. 이자차액보전 : 2.0%

5.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6. 신청접수

- 가. 신청기간 : 2025. 09. 15.(월) ~ 자금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평일 9시~16시
-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022/2053)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bok.kr>)
- ▶ 온라인자금신청 → 공고문 →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검색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 홈페이지(<https://jbok.kr/>) 회원가입 필수
-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 미비서류 안내를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제출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별지 제1호, 2호 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재표 1부

※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재무제표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서류)

○ 추가서류

① 직접피해기업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1부

* 발급처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한함

② 간접피해기업

- 직접수출기업의 수출증빙자료(직접수출기업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수출 기업과의 거래 증빙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7. 대출취급은행 : 12개 시중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8.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용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02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기 타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사·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제공 기관)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기업애로해소지원단), 관내 시, 군, 도의회, 유관기관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현재 12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외환(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사·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 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참고1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용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p.1)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